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8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4월 3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람료 할인 대상에 추가하여 시 주요사업 활성화 및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 대상에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추가함
(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제출
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원안동의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
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24. 3. 8. ~ 3. 28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문화본부 박물관과 정익승 (☎2133-4237)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기획전시에는 서울특별시 또는 시 출연기관이 운영(위탁운영을 포함한다)하는 문화시설 및 공원시설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이용한 후 1개월 이내에 미술관을 관람하는 사람에 대하여는”을 “기획전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.

1.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이 운영(위탁운영을 포함한다)하는 문화시설 및 공원시설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이용한 후 1개월 이내에 미술관을 관람하는 사람
 2.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
- ④ 제3항에 따른 할인관람료는 관람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무료관람)”을 “(무료 관람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12호 중 “다둥이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다둥이”로 한다.
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

제11조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3조제1호 중 “경우에도”를 “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5항 단서 중 “허가”를 “대관허가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주의 의무”를 “주의의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승인 없이”을 “승인없이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 중 “원상 복구”를 “원상복구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25조제3항 중 “대여허가조건”을 “대여허가 조건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4항 중 “상호 간”을 “상호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이상”을 “이상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29조제3호 중 “대관 허가”를 “대관허가”로 한다.

제30조제4항 중 “때”를 “때에”로 한다.

제31조제3항 단서 중 “3분의2이상의”을 “3분의2 이상의”으로 한다.

제32조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35조제2항 중 “해당업무”를 “해당 업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민간 위탁 할”을 “민간위탁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.

- 1. ~ 3. (생략)
-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의 법령에서 무료관람 대상으로 지정한 사람
- 5. ~ 11. (생략)
- 12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(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)

- 13. ~ 18. (생략)
- ② (생략)

제11조(대관허가) 시장은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13조(대관허가 신청) 전시실 대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미술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대관하려는 자의 주소 및 성

-----.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

- 5. ~ 11. (현행과 같음)
- 12.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다둥이-----

- 13. ~ 18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대관허가) -----
----- 범
위-----

-----.

제13조(대관허가 신청) -----

-----.

- 1. -----

명(단체의 경우에도 그 단체
의 명칭과 소재지, 대표자의
주소 및 성명)

2. ~ 5. (생략)

제16조(대관료) ① ~ ④ (생략)

⑤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
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허가를 받
는 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
인하여 전시시설을 이용하지 못하
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
한다.

제19조(대관자의 준수사항) ① 대
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
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
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
다하여야 한다.

② 제13조 규정에 따라 대관허
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
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
수 없다.

제20조(손해배상 및 변상조치) ①
(생략)

② 대관자는 제19조제1항의 관
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술관
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
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

----- 경우에는 ---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대관료) ① ~ ④ (현행과
같음)

⑤ -----
----- . ---- 대관허가-----

----- .

제19조(대관자의 준수사항) ① --

----- 주의의무-----
----- .

② -----
----- 승인없이

----- .

제20조(손해배상 및 변상조치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원상

복구하여야 한다.

제22조(미술관자료 구입) ① 시장
이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
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
구입하려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
내에서 하되 미술관자료추천회
의와 가격평가심의위원회, 제27
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
쳐야 한다.

② ~ ⑥ (생략)

제25조(미술관자료 열람 등) ① ·
② (생략)
③ 미술관자료의 대여허가조건,
유료·무료 등에 관한 사항은
규칙으로 정한다.

제26조(미술관자료기증) ① ~ ③
(생략)

④ 미술관자료기증과 관련된 각
위원회는 위원 상호 간 중복 위
촉하지 아니한다.

⑤ 수증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
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
다.

⑥ (생략)

⑦ 시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서를
증정하고, 기증자의 요구가 있
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

복구-----.

제22조(미술관자료 구입) ① ----

----- 범위

-----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미술관자료 열람 등) ① ·
② (현행과 같음)
③ ----- 대여허가 조건

-----.

제26조(미술관자료기증) ① ~ ③
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 상호간 -----
-----.

⑤ -----
----- 이상의 -----
-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
----- 범위-----

기증미술관자료 평가액의 20% 한도 내에서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그 기증미술관자료의 평가액은 미술관 가격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한다.

제29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·자문한다.

- 1. 2. (생략)
- 3. 대관허가 심의에 관한 사항
- 4. 5. (생략)

제30조(위원장과 부위원장) ① ~ ③ (생략)

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1조(위원회 회의) ①·② (생략)

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작품구입은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2조(위원수당)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, 여비 등의 필요한

제29조(위원회 기능) -----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대관허가-----
- 4. 5.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위원장과 부위원장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때에 -----.

제31조(위원회 회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3분
----- 의2 이상의-----.

제32조(위원수당) -----
----- 범위-----

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35조(자체규정의 제정 및 민간 위탁) ① (생략)

② 관장은 미술관 업무 중 공공 서비스의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미술관의 업무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『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를 적용한다

-----.

제35조(자체규정의 제정 및 민간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해당 업무-----.

③ ----- 민간위탁할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「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하여 제8조(관람료)제3항제2호에 관람료 감면대상으로 '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'를 추가하고자 함
- 이에 유효한 기후동행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관람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세입감소가 발생함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감면기간 : 2024년 5월 22일(조례 공포·시행예정일) 이후 발생
- 감면비율 : 14% 적용(다동이 행복카드와 동일비율 적용)

(에드워드 호퍼 입장료)

대 상	입장료
일 반	17,000원
청 소 년	15,000원
어 린 이	12,000원
다동이 행복카드	입장료의 2,000원 할인

- 예상 할인 입장비율 : 10% [기후동행카드 이용자(50만)/전체일평균대중교통이용자 (500만)]
- 연간 평균 유료입장 수입 : 315,017천원
- (유료전시3회 수익)÷6년('19~'24년)으로 계산(유료전시 2년당 1회 개최, 24년 미개최 예정)

(단위 : 천원, 명)

구분(전시명)	전체 입장객수	입장료 수익
합계	807,529	1,890,107
'19년 데이비드호크니	375,350	697,068
'21년 빛: 테이트 특별전	101,053	489,897
'23년 에드워드 호퍼	331,126	703,142

○ 비용추계 산식

- 1차년도 : 연평균 입장료 수익(315,017천원) × 0.1(기후동행카드할인자 비율 10%) × 0.14(감면비율 14%) × 222일/365일 = 2,682천원
- 2차년도 : 연평균 입장료 수익(315,017천원) × 0.1(기후동행카드할인자 비율 10%) × 0.14(감면비율 14%) = 4,410천원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수입	감면입장료	2,682	4,410	4,410	4,410	4,410	20,323
	소계(b)	2,682	4,410	4,410	4,410	4,410	20,323

4. 재원조달 방안 : 해당없음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국비	-	-	-	-	-	-
시비	지방세수입	-	-	-	-	-	-
	세외수입	-	-	-	-	-	-
	지방채 등	-	-	-	-	-	-
	민간	-	-	-	-	-	-
	기타	-	-	-	-	-	-
	합계	-	-	-	-	-	-

5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6. 작성자 : 문화본부 박물관과 정익승(02-2133-4237)